Anti-Corruption & Civil Rights Commission

신고 · 처리 절차를 알아볼까요?

신고자

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**공공기관·감독기관, 감사원, 수사기관, 국민권익위원회**에 신고

조사기관

신고내용에 대하여 **감사·수사·조사**

조사결과에 따라 **공소제기, 징계처분** 등 조치

결과와 **조치사항**등을 신고자에게 통보

신고자에 대한 보호·보상도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!

불이익조치 금지 | 원상회복 조치 |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| 책임감면

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
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
보상금·포상금을 지급합니다.

금품등 수수에 대해 알아볼까요?

국민결愛 110
정부민원 110

부패 · 공익침해 신고
1398

Android IOS

국민권익위원회
고충처리 · 부패방지 · 행정심판 · 제도개선

339-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
TEL : (044) 200-7706 FAX : (044) 200-7939
www.acrc.go.kr

정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.0
개방 · 공유 · 소통 · 협력

청렴한 세상

한눈에 보는

청탁금지법
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

국민권익위원회
고충처리 · 부패방지 · 행정심판 · 제도개선

청렴 대한민국! 새롭게 시작합니다.

「청탁금지법」은
어느 곳, 누구에게나 깨끗하고, **공평한 세상**을 원하는
국민의 마음을 담아 **만들어진 법**입니다 !

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여
대한민국의 **새로운 청렴문화를 조성**해나가겠습니다!

※2016년 9월 28일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시행

청탁금지법 한눈에 알아보기

이런 기관들이 포함돼요!

헌법기관,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
시·도 교육청, 공직유관단체, 공공기관,
각급 학교, 학교법인, 언론사

세부류의 대상자가 있죠!

공직자등

- 국가·지방공무원, 공직유관단체·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및 배우자
-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
-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및 배우자

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(공무수행사인)

※ 공무수행사인의 유형(4개)

-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
-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
-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·위탁받은 자
- 심의·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

일반국민

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

부정청탁에 대해 알아볼까요?

Anti-Corruption & Civil Rights Commission

부정청탁의 금지에 대해 알아볼까요?

위 14가지의 유형에 대한 공직자등의 지위·권한 남용

예외사유로 7개 가이드 라인을 제시 하였습니다

1. **법령·기준**에서 정하는 **절차·방법**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
2. 공개적으로 **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**를 요구하는 행위
3. 선출직 **공직자·정당·시민단체**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**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**하는 행위
4. **공공기관에 직무**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·요구하거나 확인·문의 등을 하는 행위
5. **직무 또는 법률관계**에 관한 확인·증명 등을 신청· 요구 하는 행위
6.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**직무에 관한 법령·제도· 절차**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
7. 그 밖에 **사회상규에 위배되**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행위

부정청탁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?

과태료

- **제3자를 통해**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**이해당사자** ➡ **1천만원** 이하
- **제3자를 위하여**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**(민간인)** ➡ **2천만원** 이하
- **제3자를 위하여**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**공직자등** ➡ **3천만원** 이하

형사처벌

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**공직자등** ➡ **2년** 이하 **징역**, **2천만원** 이하 벌금

공직자등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**징계**를 **의무화** 하였으며, **징계**와 함께 **과태료 부과** 또는 **형사처벌** 받습니다.

Anti-Corruption & Civil Rights Commission

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대해 알아볼까요?

이것이 ~ 금품등 수수예요

- 동일인으로부터 1회 **100만원 초과** 매 회계연도 **300만원 초과 금품등** 수수
- 직무와 관련하여 1회 **100만원 이하** 금품등 수수
- **배우자**가 **수수 금지 금품등**을 받은 경우
- **외부강의**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**금액을 초과**하는 사례금 수수

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8가지가 있습니다

1. **위로·격려·포상**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
2. 원활한 **직무수행·사교·의례·부조 목적**으로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**가액 범위안의 금품등**
3. **정당한 권원**(權原)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
4. **친족이 제공**하는 금품등
5.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, 장기적·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**질병·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**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
6. 직무관련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**교통, 숙박, 음식물 등**의 금품등
7.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**기념품 또는 홍보용품**
8. 그 밖에 다른 법령·기준 또는 **사회상규**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

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?

과태료

-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**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**을 수수한 공직자등 ➡ **수수금액 2배** 이상, **5배** 이하
- **기준초과 강의 사례금**을 수수한 공직자등 ➡ **500만원** 이하

형사처벌

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부터 **1회 1백만원** 또는 **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등**을 수수한 공직자등 ➡ **3년** 이하 **징역**, **3천만원** 이하 **벌금**